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정책적 조치

Agricultural Policies for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FTA)

김 병 철*
Kim, Byung-Chul

1. 머리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GATT/WTO(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World Trade Organization)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립되는 개념인 지역내 무역협정 체제를 말하며, 양국간 혹은 지역내 몇몇 국가간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성장 도모, 경제적 후생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국가간의 협약이다.

우리나라가 GATT 체계에 집중하는 동안 세계 각국은 다양한 지역간 FTA를 통하여 자국생산품의 경쟁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 사실상 우리도 FTA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실행을 미루고 있는 동안 주변여건은 점점 다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감이 있으며, 이제 겨우 첫 번째 시험으로 한·칠레 FTA 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부 농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비준안 동의절차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어, 앞으로 일본, 중국, 아시아 국가 등 주변국가와의 FTA 체결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0년 7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172개 지역무

역협정이 발효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WTO 회원국은 1개국이 평균 5개의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한편 기존 발효중인 FTA간에도 양자간 통합이 추진됨으로써 점차 거대한 지역협력체제를 형성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남미지역경제협력체(Mercado Comun del Sur, MERCOSUR) FTA 협상, 호주·뉴질랜드 경제협정(Closer Economic Relations, CER)+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²⁾ Free Trade Area, AFTA)와의 연계 협상 등은 기존 지역무역협정간 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EU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해 가고 있는 지역무역협체의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출범한 EU는 중·동구권 뿐만 아니라 지중해·남미지역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EU는 2005년까지 유럽지역과 MERCOSUR와 통합함으로써 대륙간 경제협력체(EU+MERCOSUR FTA)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유럽지역과 지중해연안 12개국과의 자유무역협력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 농업기반공사 농지사업처 (kimbc@karico.co.kr)

1) 정인교, 무역자유협정(FTA) 이해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9.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1967년 8월에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5 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를 말함. 1984년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에는 베트남이 가입하고, 이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가입하여 현재 회원국은 10개국으로 구성됨.

아니라 EU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결합체인 TAFTA(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TAFTA)도 거론되고 있어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994년 1월에 발효된 NAFTA는 2005년까지 북남미 34개국으로 구성된 미주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1992년 제4차 ASEAN 정상회의 결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FTA가 창설되었으며, AFTA는 1995년에 베트남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 들인데 이어 1997년에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추가로 영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남아 전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무역협정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AFTA와 CER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계통상환경은 WTO/DDA(Doha Development Agenda)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력구도를 기본적인 틀로 유지해 가고 있는 가운데 다자간 협상이 수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역 FTA 협상구도를 통하여 양자간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그룹간 협력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외교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상관계에서도 쌍방의 계약으로 한쪽편 국가의 일방적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는 없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 협상의 기본이다. 지금 한·칠레 FTA는 양국간 이해는 조정되었으나 우리 국내의 산업간 문제로 인하여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자유무역구도가 지속되는 한 농산물개방도 시간이 문제일 뿐 영원히 담을 쌓고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이 근래 들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시각이다. 이러한 세계시장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다음에서는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FTA관련 정책과 한·칠레 FTA 협상동향, 농업개방을 앞두고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내용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FTA 정책 및 한·칠레 FTA 협상 동향

우리가 본격적으로 FTA를 구상하게 된 것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를 지나면 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와의 체결을 구상하고 있으나 첫 번째 시도인 칠레와의 FTA 체결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1999~2000년에는 일본과 양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공동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태국, 뉴질랜드와는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동연구도 시행하였다. 칠레와의 FTA는 칠레가 체결한 여러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상품에 미칠 수 있는 차별적 대우를 제거하고,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확보로 활용하며, 칠레의 FTA 체결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FTA 정책의 모델케이스를 확립하는 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와의 FTA 타결경험은 향후 일본, 미국, 중국, 아시아 각국 등 다른 지역과의 체결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과거 북미지역에서 NAFTA가 추진될 당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이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산물 개방을 둘러싼 국내외 사정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공식 의결하였다. 주요의결 내용을 보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추진하며, 주요 거점국가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거대경제권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연구검토를 진행해 나가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양국 정상은 1999년 9월 뉴질랜드 북쪽섬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9년에 시작된 일본과의 FTA 공동연구 결과는 2000년 5월과 9월에 각각 서울, 동경에서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발표된 바 있으며, 이 후 양국은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결성하여,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FTA 추진방향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개혁과 개방 정책 유지, 지역주의 확산에의 적극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 지역의 확보,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³⁾.

1997년말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에 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특히 정부는 IMF 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⁴⁾.

한편,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 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지역주

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다급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FTA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이러한 타격이 직접적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내수 침체나 반덤핑 조치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는 우리제품의 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내경기가 침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발생한 역외차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과 같은 일부 산업분야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그간 진행되어 온 FTA 협상동향을 보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중국, 아시아 일부 국가와의 FTA 체결을 계획하였으나 아직은 연구검토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칠레 FTA가 유일하게 본 궤도에 올라 있으나 2003년 12월 현재 국회동의 단계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한·칠레 FTA 협상체결의 진행과 이후 국내 경제에 미치는 결과에 따라 이후 체결을 앞두고 있는 일본, 중국 등과의 FTA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칠레 FTA 협상 추진경위를 보면, '98.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번째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지금까지 6차례의 공식적인 협상을 추진한 결과, 2002년 10월 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 타결을 보았다. 타결된 내용은 다음

3) 정인교, 무역자유협정(FTA) 이해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9.

4) 김준동,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자료, 2000. 5.

과 같다⁵⁾.

농축산물 분야 양허내용을 보면,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토록 하고 ①FTA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쌀, 사과, 배이며, ②포도는 계절관세로 하고⁶⁾, ③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은 DDA 협상후에 논의하며, ④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은 무관세 쿠틀라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토록 하였다. 한편 국내농업에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⑤조제분유, 과실혼합주스 등은 6년 거치 후 10년동안 관세를 점진적으로 감축(16년 내 철폐)하고, ⑥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은 협정발효 후 10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를 감축(10년내 철폐)하며, ⑦기타 과일주스는 협정발효 후 9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 감축(9년내 철폐), ⑧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은 협정발효 후 7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7년내 철폐), ⑨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당류, 초콜렛, 면류 등 품목은 협정발효 후 5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5년내 철폐), ⑩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은 협정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협상하였다.

농축산물과 관련한 협정문 주요내용을 보면,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인상 등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를 확보하였으며,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육류, 신선 과실류는 칠레에서 완전 생산될 경우에만 칠레산으로 인정하고, 특히 육류는 칠레에서 출생하여 도축된 것만 칠레산으로 인정하는 등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한·칠레 FTA 체결의 품목별 영향을 보면, 곡물류는 칠레의 곡물자급율은 60% 수준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돼지고기는 칠레의 양돈산업 규모가 적어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쇠고기, 닭고기는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물량이 소량이어서 기수입되고 있는 물량내에서 수입선 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장의 경우 국내 생산실적은 거의 없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영향을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유는 TRQ 제공 없이 DDA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하여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칠레 FTA 협상체결에서는 무엇보다도 과실류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포도를 보면, 노지포도는 주출하시기(8~10월)가 칠레산 수입·유통시기(1~7월)와 달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시설포도중 가운데재배(4~6월 출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복숭아, 키위, 자두 등은 칠레산 수입유통기간이 국내산과 경합되지 않아 해당품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다른 과일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자두, 감귤 등은 TRQ 물량이 국내생산량에 대비하여 미미하고, TRQ 이외의 물량에 대한 관세 감축 문제 등은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논의키로 하였으며, 단감은 칠레가 생산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수출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과실주스, 통조림 등에 대한 관세 인하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국산과실에 대한 가공용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지원정책

정부는 FTA/DD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세우고 농어업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시도하고 있다⁷⁾.

5) 농림부, http://www.maf.go.kr/asp/06_oversea/oversea03_04.asp.

6)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 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하고,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

7) 농림부, FTA 대비 농업지원대책, 2003. 7. 16.

이에는 특히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 입안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서 농어업인 지원 4대 특별법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⁸⁾.

첫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내용이다. 본 법의 제정목적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 5년마다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총괄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하는 것 ▶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작업이나 어로작업 등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등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학교 학생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와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주거편의 우선제공, 특별수당 등의 지급⁹⁾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의 진흥, 농어촌정보화 촉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은 농어촌지역중

합개발계획수립 시행, ▶ 영농조건이 불리해 농업소득이 낮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경관보전, 농어촌관광, 도·농간 교류 등 지역활성화 사업 지원, ▶ 본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특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 지원토록 하는 동시에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번째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자. 본 법의 주요내용은 ▶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03년 12월31일 이전에 빌린 정책자금 가운데 '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5년간 거치한 후 15년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책자금의 이율은 현재 연 3%에서 1.5%로 하향조정 하되 연 4%를 상한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¹⁰⁾ ▶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고 ▶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급락 기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리 3%의 이율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 신설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전에는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3년거치 후 17년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농어업인에게는

8) 농업기반공사, CEO 포커스 2003-8, 2003. 11.

9)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현재 22% 수준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비율을 '04년에 30%로, '06년에는 50%까지 확대하고, 현재 표준 월소득 22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지만 '04년에는 월소득 31만원 기준, '05년부터는 57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자 보험료의 50%로 보조금을 인상하고 정책지원에서 소득별 정률·정책지원으로 개편하며, '04년부터는 영농규모 1ha미만 농어업인 자녀(0-5세)에게 1인당 월 10만2,000원의 영유아 보육비를 보조, '05년부터 영농규모가 1ha이상 농어업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농작업상해공제의 공제로 정부지원을 늘려 산재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 '05년부터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무이자 지원단가를 264만원(현재 2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2만명(현재 1만5천명)으로 확대지원.

11) 정책자금의 금리는 1.5%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연리 4%를 정책자금이율의 상한으로 해서 재특회계 등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정책자금 15조 1,000억원중 장·단기성 자금을 뺀 10조원과 연대보증피해자금 5,000억원에 대해 금리를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토록 하였으며, 상환기간이 1년인 농업경영자금 3조원과 20년인 농지구입자금 2조원은 제외됨.

이자액의 40%를 경감해 주도록 해 부채경감대상 농어업인과 정상적 상황 농어업인간 형평성을 유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¹²⁾.

세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이다. 이 법은 앞에서 언급한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국내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관련 농어업인을 지원코자 입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 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 및 영어 규모확대, 생산 기반정비, 고품질·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보조 또는 용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가가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설치¹³⁾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농어업인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설치 ▶ 농림부 장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허된 일정수량에 대해 낮은 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징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다. 농어촌특별세는 '93년 12월 UR 농산물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수립한'

농어촌발전대책 '에 투자할 투자자금을 마련코자 '94년 6월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별세법이다. 금번 개정내용은 지난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제정되어 '04년 6월말로 과세시한이 만료되는 본 법의 과세시한을 '09년 6월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농민단체들은 농특세법개정안의 과세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간징수액도 현재 1조 5천억원에서 최소한 2조원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무역질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발빠르게 자국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간 교역구도로 구축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농업부문만은 줄곧 이러한 움직임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체제강화에 실패했다는 자책감도 없질 않아 보인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약체로는 EU가 가장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NAFTA, CER, AFTA 등도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EU+MERCOSUR, CER+AFTA, EU+NAFTA 등 기존 FTA 상호간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더욱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들 그룹에 속하지 못한 여타 국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져 온 것은 사실이나 국내농업부문에 산재해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 때문에 미루어져 오다가 IMF를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도 세계시장의 일원임을 공감하게 되었다. 그간 우리가 취해온 FTA 추진일정에는

12) 현재는 이자를 분할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자액의 20%를, 1년 이상 조기상환할 경우에는 1년치 이자액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음.

13) 최초의 자유무역협정(한·칠레 FTA)을 이행함에 있어 이 법 시행 후 7년간 총 8,000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출연금, 기부금, 마사회로부터의 출연금, 수입이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금으로 규모확대를 위한 과수원매입은 용자, 기타 경쟁력제고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하였음.

일본, 중국, 아세아 일부국가와의 FTA체결을 검토한 바 있지만, 오직 한·칠레 FTA 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한·칠레 FTA의 핵심은 농업부문의 이해관계 조정에 있다. 현재 한·칠레 FTA 체결안은 국회의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그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한·칠레 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개방을 앞두고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입안하고 농어업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는 특히 한·칠레 FTA체결에 대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 입안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어업인 지원 4대 특별법안'의 제·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정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로드맵)'의 내용을 들고 농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순회 토론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 토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를 무산시킨 지역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부의 로드맵은 겉으로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한·칠레 FTA 비준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견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향후 10년간 농업부문 투자계획인 1백19조원도 'FTA 비준용'이라는 것이다.

FTA 체결에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관건이다. 그리고 국가간 조정이 어렵게 성사된 이후에도 국내 산업부문간 갈등문제 해결은 여전히 난제로 남는다. 이번 한·칠레 농업협상도 사실은 1998년말 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해 10월 최종 타결을 보기까지 5년간의 기간이 걸렸다. 이번 한·칠레 FTA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출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만 이

러한 어려운 과정은 향후 남은 FTA 체결을 앞두고 값진 교훈이 될 수도 있다.

우리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경제구조적 형편상 좋은 싫든 해외시장에 많은 부문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더욱이 개방화로 가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 조류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왕 개방을 해야 할 바에야 수세적 자세로 전전공공하기보다는 보다 공격적인 분위기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도 실질적인 농업구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업인 지원 4대 특별법안'의 내용대로 실천하는 의지를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준동, 2000,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자료, 5.
2. 농림부, 2003, FTA대비 농업지원대책.
3. 농림부, http://www.maf.go.kr/asp/06_oversea/oversea03_04.asp.
4. 농업기반공사, 2003, CEO 포커스.
5. 정인교, 2001, 무역자유협정(FTA) 이해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